

# 지속가능한 발전 및 POST 2015

## 05.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부문별 목표와 이해



##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전반적 개요

- SDGs는 1년여 간의 UN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의 활동과 회원국 간의 합의를 통해 2014년 7월 UN 총회에 보고, 현재 Post-2015 의제에 있어 목표와 세부목표를 설정한 상황임
- UN OWG의 활동 및 Post-2015 개발의제 정부 간 협상회의 등 총 2년여 간의 시간동안 UN 내외에서 시민사회와 학계, 민간단체, 전문가집단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 결과 SDGs는 총 17대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구 보편의 목표로 발표
- SDG를 지난 2014년 8월 12일 발표된 공개작업반의 보고서는 2015년 하반기에 유엔통계국(UN Statistical Division, UNSD)과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에서 검토되었으며, 2016년 3월경 지표가 확정될 예정
- SDGs는 '포용적이고 공평함(inclusive and equitable)'을 기본정신으로 17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크게 빈곤퇴치,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보전 및 이행협력 등 5가지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고 총 169개의 세부적인 목표가 설정, 제안됨
- 1) 빈곤퇴치 부문은
  -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세부목표 7개
  - 목표 2: 기아 퇴치, 식량안보 및 적절한 영양섭취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도모; 세부목표 8개

--> 2개의 목표와 총 15개의 세부목표를 지님
- 2) 사회발전 영역은
  - 목표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추구; 세부목표 13개
  - 목표 4: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추구; 세부목표 10개
  - 목표 5: 성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익 실현; 세부목표 9개
  - 목표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축소 ; 세부목표 10개
  -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추구,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성 제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세부목표 12개

--> 5개의 목표와 총 54개의 세부목표를 담고 있음
- 3) 경제성장 부문은
  -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도모; 세부목표 12개
  - 목표 9: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도모; 세부목표 8개

-->2개의 목표와 총 20개의 세부목표를 담고 있음
- 4) 환경보전 영역은
  -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적 이용가능성 및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세부목표 8개
  - 목표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확보 ; 세부목표 5개
  -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 환경조성; 세부목표 10개

-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확보 ; 세부목표 11개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는 긴급조치; 세부목표 5개
-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세부목표 10개
- 목표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combat), 토지 황폐화 중단(halt) 및 반전(reverse),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 세부목표 12개

--> 7개 목표와 총 61개의 세부목표가 설정되었음

5) 이행협력 분야에는

-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세부목표 19개의 내용이 담겨 있다



<5개 영역별로 재구성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성(괄호안은 세부목표 항목수)>

## 2. 부문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세부목표

□ 지속가능발전 17대 목표와 세부목표

목표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 1.1 모두를 위해 모든 곳에서 하루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을 2030년까지 근절
- 1.2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빈곤한 삶을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비율을 2030년까지 최소 절반으로 감소

- 1.3 사회 안전망(floors)를 비롯하여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 보호체제 및 조치 이행 및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coverage) 달성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자원(economic resources)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기본 서비스와 소유권(ownership)에 대한 접근, 토지 및 기타 형태의 재산(property), 유산(inheritance), 천연자원, 적절한 신 기술, 소액금융(microfinance) 등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것을 보장
-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현상,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
- 1.a 개발협력 강화 등을 통해서 다양한 출처로부터 재원을 상당히 동원하여 개도국과 특히 LDC에게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여 모든 측면에서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이행을 보장
- 1.b 빈곤층 친화적이며 성(性)을 고려한(gender-sensitive) 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신설하여 빈곤 퇴치 행동에 대한 투자 촉진 지원

<p>함의</p> <p>⇒ MDGs의 목표 1과 마찬가지로 SDGs의 목표 1 역시 끝내지 못한 빈곤종식을 전 지구적인 과제로 강조</p> <p>⇒ 다른 목표에 비해 구조화나 목표지향성 측면에서 구체화된 세부목표들 지님</p> <p>⇒ '모든 형태의 빈곤의 퇴치'는 영양, 교육, 보건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 표현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SDGs 전반적인 취지에 부합함</p>
--

- 목표2. 기아 퇴치, 식량안보 및 적절한 영양섭취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도모
- 2.1 2030년까지 기아를 퇴치하고 모든 사람과 특히 빈곤층 및 영·유아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연중 내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풍족한 식량에 접근성을 가지도록 보장
-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및 체력저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등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결핍을 종식시키고, 십대 여학생,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 및 고령층의 영양 필요를 해소
- 2.3 2030년까지 토지, 기타 생산적 자원과 투입요소(inputs), 지식, 금융 서비스, 시장, 부가가치 창출 및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두 배 증가시키고, 소작농과 특히 여성, 토착지역주민, 가족농업 종사자, 목축업 및 어업 종사자의 소득을 두 배 증가시킴
-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체제 확보. 생산성과 생산량을 늘리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이행 보장
- 2.5 2020년까지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식물은행을 통해서 종자, 재배식물, 가축 및 사육 동물과 관련 야생 동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 유전 자원과 관련 전통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접근 및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
- 2.a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농업 연구와 확대서비스

(extensive services), 기술개발, 식물과 가축 유전자 은행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여 개도국과 특히 최빈개도국에서 농업 생산역량을 강화

- 2.b 모든 형태의 농업 수출 보조금과 모든 수출 조치의 병행제거 등 전 세계 농업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수정하고 예방하며, 그 효과는 도하 개발 라운드의 위임사항에 일치함
- 2.c 농업 원자재 시장과 파생상품의 적절한 기능 확보 및 식량 보유량(food reserve) 등의 시장 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성 촉진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 식량가격의 극심한 변동성을 제한

<p>함의</p> <p>⇒ 굶주림 없는 삶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리임을 천명하여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이 우리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p> <p>⇒ 빈곤 문제는 농촌지역(rural areas)에서 더욱 심각하며, 특히 소농과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빈곤과 기아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p> <p>⇒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환경보존과 알맞은 규모로의 생산기반 확보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p>
---

목표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추구

- 3.1 2030년까지 산모사망 비율을 10만 건의 생존출산율 중 70건 미만으로 감소
- 3.2 2030년까지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 퇴치
- 3.3 2030년까지 AIDS 전염병, 결핵, 말라리아, 열대풍토성 소외질환 종식 및 간염, 수인성 질환, 기타 전염성 질환 퇴치
- 3.4 예방 및 치료를 통해 2030년까지 비전염성질환(NCDs)으로 인한 조기사망 1/3로 감소, 정신 건강 및 웰빙 증진
- 3.5 마약과 알코올 남용 등과 같은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 3.6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도로 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소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생식건강과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의 통합 등을 위하여 성·생식 보건의료서비스에 보편적 접근 확보
- 3.8 금융리스크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저렴한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성 등을 비롯하여 보편적 건강 보험제도(UFC) 달성
-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 대기·수질·토양 공해 및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건수를 상당히 감소
- 3.a 적절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담배규제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행을 강화
- 3.b 개도국에 일차적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백신과 의약품의 연구개발 지원, 공중보건 보호와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 접근성 제공을 위한 유연성에 관련된 TRIPS 협정의 조항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는 개도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도하 선언에 의거하여, 저렴한 필수 의약품 및 백신에 접근성을 제공
- 3.c 보건 재원(health financing) 및 개도국과 특히 LDG와 SIDS에서 보건인력의 고용, 계발, 훈련, 고용유지를 상당히 증가시킴
- 3.d 모든 국가와 특히 개도국에서 국가·국제적 보건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리스크 감소 및

관리 역량을 강화

<p>합의</p> <p>⇒ 목표 3은 개별적인 보건이슈의 해결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권을 인식을 지향. 이를 위해 모든 인류가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동시대에 해결되어야 할 장벽들을 제거하고자 세부목표와 지표들을 제시</p> <p>⇒ MDGs의 아동사망 감소, 모성건강향상, 전염성질병감소와 같이 보건 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포괄성을 강조하여 MDGs에서 배제되었던 다양한 건강의 문제들을 포함</p>
--

목표4.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추구

-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무상의 평등하고 양질의 초·중고등 교육을 완수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보장
-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유아발전 프로그램, 아동 보육(care) 및 취학 전 교육에 접근하여 초등교육 이수 준비를 보장
-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대학교를 포함한 저렴하고 양질의 기술·직업훈련·고등 교육에 동등한 접근성을 확보
- 4.4 2030년까지 기능적(technical)·직업적 기술을 포함하여 고용,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관련 기술(skill)이 있는 청년 및 성인의 수를 x% 증가
- 4.5 2030년까지 교육 내 성별 격차(disparities)를 제거하고, 장애인, 토착지역주민과 취약아동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모든 단계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
- 4.6 2030년까지 모든 청년과 최소 x%의 성인 남녀가 문해력과 기본 수리능력을 달성할 것을 보장
-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도모, 글로벌 시민의식, 문화의 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적 기여를 인지하는 등으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보장
- 4.a 아동, 장애여부 및 성(性)을 고려하고(sensitive)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 시설을 구축·개선
-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및 기타 개도국의 직업훈련, ICT, 기능·공학·과학 프로그램 등의 고등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개도국 및 특히 LDC, SIDS, 아프리카 국가 출신 학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수를 x% 늘림
- 4.c 2030년까지 개도국 및 특히 LDC와 SIDS에서 국제 협력 등을 통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양질의 교사를 x% 증가

<p>합의</p> <p>⇒ MDGs가 지나치게 교육의 양적 성장에 집중하여 교육의 질이 도외시되었다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 보장'을 강조</p> <p>⇒ '모두를 위한(for all)'은 범세계적인 기초교육 운동인 Education for All(EFA)의 정신을 계승</p> <p>⇒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본 교육 목표가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까지 포함하는 목표임을 명시</p>
--

목표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익 실현

- 5.1 모든 곳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퇴치
- 5.2 공적·사적 공간에서 인신매매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비롯하여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
- 5.3 아동 조혼, 강제 결혼 및 여성 할례 등을 비롯한 모든 악행을 제거
- 5.4 공공 서비스,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및 사회보호 정책 제공을 통해 무급간병과 가사를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국가별로 적절하게 가계와 가족 내에서 책임 공유를 증진
- 5.5 정치·경제 및 공적 삶의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동등한 리더십 기회를 보장
- 5.6 ICPD의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플랫폼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 문서에 따라 합의한 바, 성(性)·생식 건강 및 생식권에 보편적 접근 보장
-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자원(economic resources)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소유권 에 대한 접근, 토지 및 기타 형태의 자산, 금융 서비스, 유산,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 단행
- 5.b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구형기술(enabling technology)과 특히 ICT 사용을 강화
- 5.c 모든 단계에서 양성평등과 모든 여성·여아의 권익향상을 증진하는 건전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률을 채택하고 강화

함의
⇒ MDGs에서의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분야가 취약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
⇒ 목표 5는 차별의 원인과 구조 개혁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성평등을 단일목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 목표에 반영하는 통합적인 접근의 기반을 제공
⇒ 사회, 경제, 환경분야에서 성평등과 여성 권익 이슈를 조화롭게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인권에 기반한 목표로서의 기능을 제공

목표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적 이용가능성 및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성 달성
- 6.2 여성과 여아, 취약계층의 필요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며,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공평한 공중위생(sanitation) 및 개인위생(hygiene)에 대한 접근성을 달성하고 노상배변(open defecation)을 근절
- 6.3 2030년까지 공해 저감, 유해 화학물질 및 재료 투기를 없애고 방출을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 절반으로 감소,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을 세계적으로 x% 증가함으로써 수질 개선
- 6.4 2030년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물사용 효율성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담수의 지속가능한 취수(withdrawal)와 공급을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인구 수를 상당히 감소함
- 6.5 2030년까지 적절한 경우 초국가협력 등을 통해 모든 단계에서 통합물관리(IWRM)를 이행
- 6.6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
- 6.a 2030년까지 집수(water harvesting),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 등 개도국의 물과 위생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협력과 능력강화 지원을

확대

6.b 물과 위생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강화

함의
⇒ 식수분야 MDGs는 새로운 식수 서비스 보급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기존의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취약했던 점을 개선
⇒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 사업전개를 통한 형평성 개선에 역점
⇒ 물 스트레스, 물 생산성 등 유용한 실질적 검토지표의 도입

목표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확보

- 7.1 2030년까지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보
-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증가
-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 두 배 이상 개선
-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선진화되고 더욱 청정해진 화석연료 기술 등 청정 에너지 연구와 기술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인프라와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도모
- 7.b 2030년까지 개도국과 특히 LDC 및 SIDS에서 모두를 위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술을 개선함

함의
⇒ 전통적인 화석연료와는 달리 환경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현대적 에너지로 고려, 즉 보건과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전통적 에너지가 제외된 현대적 에너지에 그 범위를 한정
⇒ 고형연료 사용에 따른 건강상의 피해, 기후변화 영향을 언급하며, 보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대적 에너지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
⇒ 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 보건, 고용, 경제 분야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삶의 질과 소득을 개선시키고, 범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음

목표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도모

- 8.1 국가별 상황에 따라, 특히 최빈개도국은 최소 GDP성장의 연 평균 7%의 1인당 경제 성장률 유지
- 8.2 고부가가치와 노동집약적 분야에 주력하는 등 다변화, 기술 향상 및 혁신을 통한 경제의 생산성 증가
- 8.3 생산적인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력 및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적 정책을 도모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 등을 통해 영세상권 및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성장을 장려
- 8.4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소비와 생산의 자원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개년 행동 프레임워크(10YFP)에 따라 선진국이 주도하여 경

- 제 성장과 환경오염의 분리(decoupling)를 위해 노력
- 8.5 2030년까지 청년층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남녀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일한 가치의 작업에 동일한 임금을 제공
  - 8.6 2020년까지 고용·교육·훈련 상태가 아닌 청년 비율을 상당히 감소
  - 8.7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근절, 강제노동 근절, 그리고 2025년까지 소년병 징집 및 이용 등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퇴치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실시
  - 8.8 이주근로자와 특히 여성 이주자,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비롯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권 및 안전한(safe and secure) 작업환경 보호
  - 8.9 2030년까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와 상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장려 정책을 고안하고 이행
  - 8.10 모두를 위한 은행(banking), 보험 및 금융서비스에 접근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
  - 8.a LDC를 위한 강화된 통합 프레임워크(Enhanced Integrated Framework)등을 통해 개도국과 특히 LDC를 위한 무역원조(Aid for Trade) 지원을 증가
  - 8.b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ILO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

<p><b>합의</b></p> <p>⇒ 포괄적 경제 성장(inclusive economic growth)은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를 만들고 사회 모든 구성 계층(특히 소외된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함을 의미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sustainable economic growth)은 경제 정책과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을 반영</p> <p>⇒ 근로 빈곤층은 비고용(unemployed) 계층과 함께 '생산적인 고용' 측면에 있어 결손 계층이라고 보고, 이러한 결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산적인 고용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향점 제시</p> <p>⇒ 양적인 일자리는 일자리의 양적 증가만이 아닌 사회적 안정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높고 사회보호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일자리제공으로 빈곤 계층의 빈곤탈피를 목표로 담음</p>
--

- 목표9.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도모
- 9.1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공평한 접근에 주력하여,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위해 지역·초국경 인프라 등의 양질의 신뢰가능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있는 인프라 개발
  -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추구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고용과 GDP에서 차지하는 산업 비율을 상당히 증가시키며 이를 LDC에서는 두 배 증가시킴
  - 9.3 소규모 산업체 및 기타 기업이 가치사슬과 시장으로 통합되거나, 저렴한 신용(credit) 등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이들이 가지는 접근성을 특히 개도국에서 증가
  - 9.4 2030년까지 사회기반시설을 개선(upgrade)하고 산업을 개편(retrofit)하여 지속가능하게 만들며, 자원 이용 효율성 향상, 청정하고 친환경적 기술 및 산업 프로세스의 채택 확장과 더불어 모든 국가가 각국의 역량에 맞춰 행동을 취함
  - 9.5 과학 연구 강화 및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1백만 명 당 R&D 종사자 수를 x% 증가시키고 공공·민간 R&D 지출 증가 등 모든 국가와 특히 개도국에서 산업분야의 기술역량을 향상

- 9.a 아프리카 국가, LDC, LLDC 및 SIDS에 금융·기술(technological)·기능적 (technical) 지원 제공을 통해 개도국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인프라 개발을 촉진
- 9.b 산업 다변화와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한 정책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개도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
- 9.c 2020년까지 ICT 접근성을 상당히 증가하고 LDC에서 보편적이고 저렴한 인터넷 접근성 제공을 위해 노력

함의
⇒ 빈곤퇴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성장 지향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인프라 건설과 산업화, 과학기술혁신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
⇒ 최빈국이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화적 접근을 언급한 목표
⇒ 과학기술이 개도국의 발전 수단으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유도

목표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축소

- 10.1 2030년까지 하위 40%인구의 소득성장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함
-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에 무관하게 모두의 사회·경제·정치적인 포용에 힘을 실어주고 증진함
- 10.3 차별적 법, 정책 및 관행을 제거하며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입법, 정책 및 행동을 도모함으로써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축소
- 10.4 정책 중 특히 재정, 임금, 사회보호 정책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형평성을 달성
- 10.5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
- 10.6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으며 합법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 글로벌 경제·금융 기관의 의사결정에 개도국의 대표성과 목소리 강화를 보장
- 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 정책 이행 등을 통하여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주와 사람의 이동을 촉진
- 10.a WTO 협약에 의거하여 개도국과 특히 최빈개도국을 위해 특혜차등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원칙을 이행
- 10.b 국가별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수요가 가장 큰 국가와 특히 LDC, 아프리카 국가, SIDS 및 LLDC에 해외직접투자(FDI) 등의 ODA와 자금흐름(financial flow)을 장려
-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줄이고, 송금과정(remittance corridors)에 드는 비용이 5% 이상일 경우 수수료를 없앴

함의
⇒ 국가 내 불평등으로 계층 간 소득 분배 개선(10.1), 사회적 신분 상태에 따른 차별 철폐, 기회 및 결과의 평등 보장(10.2, 10.3), 국내 정책 개선을 통한 평등 수준 제고(10.4) 등 국내에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지표를 제시
⇒ 국가 간 불평등에서는 전 세계 금융시장과 기구들의 규제와 모니터링 개선(10.5),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 발언권 보장(10.6), 잘 관리되는 이민정책 실현 및 송금수수료 절감(10.6, 10.c), 최빈국 특혜대우 이행(10.a), ODA 및 FDI 등의 재정지원 권장(10.b) 등 국제적으로 고려해야할 지표를 제시
⇒ 지속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 목표를 설정하여 MDGs와의 차별성을 부각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 환경조성

-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및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고 슬럼(slums)을 향상(upgrade)시킴
-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고령자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대중교통 확장 등을 통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제에 접근성을 제공하여 도로 안전을 향상시킴
-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참여적이고 통합되며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
- 11.4 세계 문화·자연 유산 보호(protect and safeguard)를 위한 노력 강화
-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특히 주력하여, 사망자 및 피해자(affected people) 수를 상당히 감소시키고, 물 관련 재난을 비롯하여 재난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GDP 대비 y% 줄임
- 11.6 2030년까지 대기질, 도시생활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도시의 1인당 부정적 환경영향을 줄임
- 11.7 2030년까지 여성과 아동,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 용이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공 장소에 보편적 접근성 제공
- 11.a 국가, 지역적 개발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도시근교(peri-urban) 및 농촌 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사회·환경 고리를 지원
-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 이주와 기후변화 적응, 재난 회복력으로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와 인간정주지의 수를 x% 증가하고, 효고 프레임워크(Hyogo Framework)에 맞춰 모든 단계에서 전체적인(holistic) 재난리스크 관리를 개발하고 이행
- 11.c 금융,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각 지방의 재료를 사용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 최빈개도국을 지원

<p>함의</p> <p>⇒ 도시를 하나의 별도로 분리된 세부분야(sector) 또는 이슈로 접근했던 기존 MDGs의 한계를 보완하여,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자의 역할로서 도시기능을 해석</p> <p>⇒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전 세계의 도시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지향점을 설정하였고, 세부목표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 이슈를 제시</p>
---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확보

- 12.1 모든 국가가 행동을 취하고 선진국이 주도하고 개도국의 개발과 역량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개년 행동 프레임워크(10YFP)를 이행
-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 달성
- 12.3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소매 및 소비자 단계의 1인당 식량낭비를 절반으로 감소하고, 수확 후(post-harvest) 식량손실을 비롯하여 생산과 공급사슬의 식량 손실을 감소
-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 프레임워크에 의거하여 화학물질과 모든 폐기물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인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에 배출하는 화학물질과 폐기물을 상당히 줄임
-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소, 재활용 및 재사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줄임
- 12.6 기업과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게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킬 것을 장려
- 12.7 국내 정책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정부조달 관행을 도모
- 12.8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방식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
- 12.a 개도국이 더욱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역량 강화를 지원
-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 관광에 지속가능발전이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이행
- 12.c 국가별 상황에 맞춰 조세제도 재조정 및 유해 보조금(만약 있다면)의 단계적 철폐 등을 통해 시장 왜곡을 제거하면서 낭비성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함. 이때 개도국의 특별한 수요 및 환경을 완전히 고려하고 빈곤층과 피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

<p>함의</p> <p>⇒ 기존의 개발의제가 강조해왔던 빈곤감소(퇴치), 보건, 교육, 평등에의 주제와 섹터별 강조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가장 상징적인 목표</p> <p>⇒ 자연자산을 유지 또는 증대시킴으로서 빈곤의 종식과 모두의 번영을 위한 기회를 확대 또는 창출할 수 있다는 설정에 그 의미를 지님</p>
--

목표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는 긴급조치

-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hazards)과 자연 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을 강화
- 13.2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을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 13.3 기후변화 감축, 적응, 영향 감소 및 조기 경보에 관한 교육 개선,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 13.a UNFCCC 하 재원에 관한 공약을 이행하고, 특히 의미 있는 감축 행동, 이행 투명성 및 조기 자본 확충을 통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완전한 운영 개시라는 맥락에서 개도국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출처로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공동으로 조달하겠다는 UNFCCC 선진국당사국의 공약을 충족함

함의
⇒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선진국에게는 기회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기후변화에 취약한 최빈국 등 개발도상국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개발에 장애 요인으로 되고 있음을 반영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
⇒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

목표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14.1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debris), 영양염류 오염 등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과 특히 내륙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히 줄임
- 14.2 2020년까지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복원을 위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하게 관리 및 보호하여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
- 14.3 모든 단계에서 과학적 협력을 강화하여 대양 산성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소함
- 14.4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최대한 지속가능한 수확량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 단기간에 어족을 회복하기 위해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획(harvesting) 규제, 남획(overfishing)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파괴적 어업 관행 종식, 과학을 기반으로 한 관리 계획을 이행
- 14.5 2020년까지 국내·국제법에 일치하고 최상가용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해안·해양 지역의 최소 10%를 보존
- 14.6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혜차등대우가 WTO 수산업 보조금 협정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함을 인지하며,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 및 남획을 유발하는 특정 형태의 수산업 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획을 유발하는 보조금을 제거하며, 신규 보조금 도입을 자제함
- 14.7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사용으로 발생하여 SIDS와 LDC가 받는 경제적 이익을 지속가능한 어업, 양식업 및 관광을 통해 증가
- 14.a 대양의 건강을 증진하고 개도국과 특히 SIDS와 LDC의 발전에 대한 해양 생물다양성의 기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높이고 연구역량을 개발하며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의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조건 및 지침을 고려하여 해양기술을 이전함
- 14.b 소규모 영세 어업인에게 해양 자원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공

- 14.c UNCLOS(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반영된 바, 당사국의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기존의 지역적·국제적 체제 등의 국제 법 당사국들은 이를 완전히 이행함

함의
⇒ 해양의 보전과 자연자원의 이용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관점이 동시에 언급되는 모호한 의제라는 한계점을 지녀 선언적 성격이 강한 목표임
⇒ 그간 종 다양성이나 기후변화 의제 내에서 다루어진 해양부분이 독립된 의제로 다루어져 해양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된 상징성
⇒ '해양과 바다는 지구 생태시스템의 핵심으로 전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Rio+20 결과문서(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내용을 반영

- 목표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combats), 토지 황폐화 중단(halt) 및 반전(reverse),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하 의무에 따라 육상, 내륙, 담수 생태계 및 서비스와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지(dryland)를 보존, 복원, 지속가능하게 사용함
-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 도모, 산림황폐화 방지, 파괴된 산림 복원, 전 세계적으로 재조림율과 녹화(綠化)비율 x% 증가
- 15.3 2020년까지 사막화 방지, 사막화, 가뭄 및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비롯하여 파괴된 토지와 토양을 복원, 토지황폐화 중립 세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
- 15.4 2030년까지 산(山)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여 지속가능발전에 핵심인 이익제공역량을 강화
-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행동을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하며, 2020년까지 위협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함
- 15.6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보장,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도모
- 15.7 보호 동식물의 밀렵과 밀매를 종식하기 위한 행동을 조속히 실시하고, 불법 야생동물 제품 수급을 해소함
- 15.8 2020년까지 외래 침입종의 유입을 막는 조치를 도입하고, 이들이 육상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줄이며, 우점종(priority species)을 통제하거나 제거함
-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지역 계획, 개발 프로세스 및 빈곤감소 전략과 회계(accounts)에 통합
-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 모든 출처로부터 재원을 동원하고 상당히 증가시킴
- 15.b 모든 출처와 모든 단계에서 재원을 상당히 동원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 재정지원을 하고, 개도국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산림 보존 및 재조림 등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관리를 증진시킴
- 15.c 지역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생계의 기회를 추구할 역량을 강화하면서 보호종의 밀렵과 밀매를 방지하려는 노력에 국제적 지원을 강화함

<p>함의</p> <p>⇒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단편적인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육상역 생태계의 전반적인 위기현황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전략목표 도출</p> <p>⇒ 종 수준에서부터 서식환경까지 아우르는 위계별 세부목표의 설정</p> <p>⇒ 인센티브 및 회계 영역을 연계하여 재정적 협력 및 지원을 위한 공동의 역할을 제시</p>
--

목표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추구,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성 제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 상당히 감소
- 16.2 아동학대, 착취, 밀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 16.3 국가-국제적 차원에서 법치주의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유출입 상당히 감소, 도난자산 회수 및 송환 강화,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퇴치
- 16.5 부패 및 모든 형태의 뇌물을 상당히 감소
- 16.6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있으며 투명한 제도 개발
- 16.7 모든 단계에서 반응형(responsive), 포용적, 참여적, 대표성이 있는 의사결정 보장
-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내 개도국의 참여 확대 및 강화
- 16.9 2030년까지 출생신고를 비롯하여 모두에게 법적 정체성 부여
- 16.10 국내법과 국제 협약에 의거하여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자유를 보호함
- 16.a 모든 단계에서 특히 개도국에서 능력을 배양하고 폭력을 예방하며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협력 등을 통해 국내 관련기구를 강화함
-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과 정책을 추구하고 시행하며, 근본적 자유를 보호

<p>함의</p> <p>⇒ 오늘날 폭력의 주체 및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히 육체적 폭력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두려움 및 불안정성을 악화시킴으로써 건전한 국가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p> <p>⇒ 건전한 거버넌스, 화해, 평화구축 등을 실현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할 것을 강조</p>
--

목표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재정

- 17.1 개도국의 세금 및 기타 수입(revenues) 징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자원동원을 강화함
- 17.2 선진국은 GNI의 0.7%를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로 제공하고, 그 중 0.15~0.20%를 최빈개도국 ODA로 제공한다는 공약을 완전히 이행함
- 17.3 개도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 재원을 동원
- 17.4 적절한 경우, 채권금융(debt financing), 부채 탕감(debt relief) 및 채무 재구성(debt restructuring)을 목표로 하는 정책 조율을 통해 개도국이 장기적으로 부채 상환능력(debt sustainability)을 달성하도록 돕고, 고부채 최빈국(HIPC)의 부채 부담(debt

distress)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대외부채를 해소함

17.5 LDC를 위한 투자 활성화 체제를 채택·이행

#### 기술

17.6 기존의 특히 UN차원에서의 메커니즘 조정 강화 및 글로벌 기술촉진메커니즘 (합의되면) 등을 통해,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남북·남남·삼각 지역 및 국제 협력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상호합의조건(MAT)에 관한 지식 공유 강화

17.7 상호 합의된 바, 양허 및 특혜조건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게 친환경기술의 개발·이전·전파·확산을 증진

17.8 2017년까지 LDC를 대상으로 기술은행 및 STI(과학, 기술, 혁신) 능력배양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영 개시하고, ICT 분야에서 특히 구현기술 사용을 강화

#### 능력배양

17.9 모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에서 효과적이고 선별적(targeted)인 능력배양 이행을 위한 국제 지원을 강화

#### 무역

17.10 도하 개발 어젠다 내의 협상 타결 등을 통해 WTO 하 보편적, 규칙기반, 개방적, 비차별적, 평등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증진

17.11 개도국의 수출을 상당히 높이고,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LDC의 비율을 두 배 증가시킴

17.12 LDC로부터의 수입에 적용 가능한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원활화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면서, WTO 결정문에 일치하게 모든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의 시의적절한 이행을 실현

#### 시스템적 사안

##### 정책 및 제도적 일관성

17.13 정책 조율 및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해서 전 세계 거시경제 안정 강화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각 국의 정치적 여력 및 리더십을 존중

##### 다자 이해관계자 참여

17.16 모든 국가와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자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이 보완해주는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함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자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도모함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임감

- 17.18 소득, 성, 나이, 인종, 민족, 이주 여부, 장애, 지리적 위치와 국가별 상황에 유의미한 기타 특징에 따라 분리(disaggregated)된 고품질의 시의 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LDC와 SIDS를 비롯한 개도국에게 능력배양 지원을 강화함
- 17.19 GDP를 보완하는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을 위한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고 개도국에서 통계 역량강화를 지원함

합의
⇒ MDGs에서 강조된 목표의 연장선상에서 그 전략을 도출
⇒ 재정 등 5개 하위 영역에서 보다 구체화된 이행수단을 제시
⇒ 개발재원 마련 및 공공·민간부문에서의 새로운 자원 동원, 포용적 파트너십 구축 등의 중요성을 아루르는 포괄적인 범위와 분야의 이행수단과 범세계적 파트너십 형성을 규정

### 3. 시사점 및 우리의 준비

#### 3.1 시사점

##### □ 목표의 광범위성과 정당성

- 2015년부터 향후 15년간 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성과목표로도 중요하게 다뤄질 이 17개의 개발목표는 절대빈곤퇴치와 기초적인 생활수준 충족에 집중했던 MDGs에서 더 나아가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호의 3대 분야를 포괄
- 상대적 불평등 해소부터 지속가능한 산업화 추진, 육상과 해양의 생태계 보호라는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룸

##### □ 의의 및 한계

- 국내외의 불평등, 평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의 영역으로 발전목표를 확대하면서 21세기의 변화된 환경과 사회적 욕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음
  - Rio+20에서 합의된 사회-경제-환경 간 균형있는 발전을 지향하는 확장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반영했고,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와 학계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발전과제로서의 기본적인 정당성을 확보
- 최종합의 된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여 이를 실제로 국제사회 모두의 발전목표로서 활용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대두
- 환경부문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SDGs는 장기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완화 (mitigation) 목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적응(adaptation)과 회복력(resilience)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 대두

#### 3.2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법제도 준비가 필요한 상황

- SDGs는 목표 영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지속가능성'과 '개발(발전)'이외에 도

‘포용’과 ‘(불)평등’을 강조하고 ‘권리’와 ‘접근성’을 보장하려 했다는 점도 특징적

- 따라서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의 위상과 내용에 맞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법률체계 정립 필요
  - .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10.1.13 제정)인 반면,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법을 상위법으로 규정하면서 개념논쟁 및 혼란 야기<sup>1)</sup>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법」 개정(10년)은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규정 삭제 등으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 민간중심의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활동 위축
- 또한 “SDGs”용어적 정의를 통일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 “지속가능개발목표”로 해석하고 있는 일부 분야의 관점을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바로잡고, 개발이 아닌 발전에 방점을 둔 중21세기 국제적 전환체계에 부합하는 정책적 일관성 확보가 시급

□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동력 제고가 필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계 재정립을 통한 추진력 제고 필요
  - .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환경부 소속)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국무총리 소속) 보다 낮은 상황
  - .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고 개발부처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야할 기구가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면서 타 부처의 정책추동이 어려움
  - . 최근 지속위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 당초 6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연장하여 지속위의 위상 재정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SDGs와 국가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연계성 확보 필요

- 향후 SDGs 도입 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를 포괄할 수 있는 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2016~2020)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보완 필요
- SDGs 관련 논의된 이슈들은 상호연계성이 매우 높아 각 이슈별 연계성을 고려한 부처간 통합정책 이행방안 마련필요

예) 물-에너지-농업 넥서스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간 조정·협력이 중요

□ SDGs 달성을 위한 ODA 지원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핵심으로 ODA 중점지원 분야 및 균등한 재정 분배 조성과 한국의 입장에서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조성 필요

1) OECD는 녹색성장을 지속가능발전의 협의(subset)개념이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가능한 방식과 구체적 방법론으로 평가('11년, OECD 채택보고서, “toward Green Growth”) UN 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Rio+ 20)는 녹색경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Tool)으로 천명 (“The Future We Want”)

**<참고 문헌>**

- 김지현, 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1: SDGs 초안분석. KOICA 개발과 이슈 19호
- 노태호, 2014. UN의 SDGs체계 논의동향과 국내 대응방안. 국회 심포지움 “국가 지속가능발전 체계 재정립과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
- KOICA,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 The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s Rio+20, 2012. The Future We Want. Rio+20 Outcome Document
- UNDP,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ooklet
- UNGC, 2011. The CEO Water Mandate
- UNGC, 2013. Corporate Sustainability and the United Nations Post-2015 Development Agenda
- UN General Assembly, 2014. Report of the Open Working Group of the General Assembly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ew York: The United Nations (A/68/970)
- UN USG for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5.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2015 Edition
- ADVANCE UNEDITED VERSION,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nu=1300>